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20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 송재봉・이재관・강득구

이병진 • 이재강 • 임호선

서영교 · 김우영 · 조인철

황명선 · 허성무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방침을 고수하였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하였음.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로 적법한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특히,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원칙에 반하는 행위임.

이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 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공권력의 붕괴와 무정부 상태 조장을 방지하고, 무너진 헌정질서 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조).

법률 제 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감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대통령 등은 경 호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대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			
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u><단</u>	<u>다</u>		
<u>서 신설></u>	만,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		
	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		
	항에 관하여 지시・감독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	제4조(경호대상) ①		
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u><단서</u>			
<u>신설></u>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		
	까지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		
	로 법관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대통		
	령 등은 경호대상에서 제외한		
	<u>다.</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